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0. 9. 9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1회용품 사용 제한(안 제5조)
- 실태조사(안 제6조)
-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·홍보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- 시행규칙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.
- 조례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,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였고,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9조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기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